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이 시 직*

I. 개관

최근 로봇,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보급의 확산으로 기존의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고정식 영상촬영기기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 안경, 스마트폰, 웨어러블 카메라 등 이동식 영상정보기기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 및 보급되면서 이를 통해 대규모의 개인영상정보가 수집·처리·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정보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가 범죄 행위의 입증과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등의 사회적 유용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개인 식별성 및 사생활 침해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2016년 12월 16일 최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70호)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들을 분석·검토하여 2017년 9월 13일 일부 수정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법률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77호)하였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원, (043)531-4357, potential47@kisdi.re.kr

Ⅱ.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 용어정의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살아있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정보로서 초상이나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안 제2조 제1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사하게 살아있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물론이고, 해당 영상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영상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안 제2조 제2호),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아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비영리단체 등도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특히, 제정안 제3조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제1항).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영상정보주체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관찰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안 제3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원래의 개인영상정보 형태를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안 제3조 제4항),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안 제3조 제3항).

2. 영상정보처리기관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영상정보처리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영상촬영기기’와 ‘기타 영상처리기기’로 구분하고, 특히, ‘영상촬영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와 착용형 기기(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카메라 등), 휴대용 기기(스마트폰,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부착형 기기(블랙박스, 드론, 이동주차 단속 카메라 등) 등의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구분하고 있다(안 제2조 제4호).

(1)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우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특정집단의 구성원이나 방문객이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하여 고정형 영상정보기기를 설치하여 촬영할 수 있다(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 기존의 허용 사유와 더불어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당초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를 촬영 할 수 있다(안 제6조 제3항),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일지라도 새로운 기술의 발전 또는 결합 가능성 정보의 증가 등으로 영상정보주체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안 제6조 제5항).

아울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되고(안 제7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직책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안 제8조).

(2)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영상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의 이행, 영상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낮은 장소에서 영상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안 제9조 제1항). 다만,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이용하는 자, 목적, 보관 기간 등을 고지하고,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안 제9조 제2항).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등의 방법으로 영상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안 제10조), 특히 무인비행장치(드론)와 같이 불빛, 소리 등으로도 영상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privacy.go.kr)를 통해 촬영시간 및 장소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대통령령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3.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당초 촬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안 제11조), 나아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영상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비식별조치를 한 경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조약 등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한 경우, 범조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12조 제2항).

또한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및 이용 방법의 제한, 폐기 기한의 설정,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안 제13조 제1항).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안 제15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안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안 제17조).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법인 등은 본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18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계 시설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업무 종사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9조).

5.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영상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교부, 보관, 촬영 및 이용·제공의 중단 또는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안 제20조), 해당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안 제21조).

또한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등을 위하여 촬영, 이용, 제공, 공개, 열람, 삭제, 폐기 등의 개인영상정보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안 제22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본 법의 위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안 제23조).

〈표 1〉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구분	구성		조항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범위 등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제6조~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제9조~제10조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11조~제14조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등
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15조~제19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제5장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20조~제23조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 등
제6장	보칙		제24조~제32조	-
제7장	벌칙		제33조~제36조	-

Ⅲ. 결 어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지난 해 12월에 이어 올해 9월 13일 재입법예고하면서 “최근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그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과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만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기기,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블랙박스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관리, 영상정보주체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 등 필요 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식별 조치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관련 신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9월에도 재입법예고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규율할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¹⁾와 시민단체²⁾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로서는 최종입법이 녹록치 않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안 번호 제2017-01-07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개인영상정보 분야의 규범이 추가됨으로 인한 수범자의 혼란 방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약화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침해 방지 등의 측면에서 개인영상정보 관련 별도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위법령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황이다. 향후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입법추진과정에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규율할 법의 형식과 체계뿐만 아니라 개인영상정보의 개념 및 보호 원칙, 생애주기(Life-cycle)별 보호기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방안 등으로 구성되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각계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제정안의 입법 내용이 국민 영상정보와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를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7),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결정문(의안번호 제2017-01-07호).
-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킹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2017),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행정안전부(2017),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77호)”.
- 행정자치부(2016),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6-370호).
- 《보안뉴스》(2017.09.14.) “개인영상정보 보호 위한 독립 법 필요해” (검색일: 2017. 09. 15).